

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88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7월 3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4조의 심의사항 중 서울시의 소비자 정책의 기본방향과 사업 목표, 연계 사업들을 정하는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 할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평가 관한 규정을 유지함(안 제14조제1항제2호).

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를 제3호부터 제5호로 하고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11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4조(위원회의 기능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(생략) 2. 제11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. · 4. (생략) 5. 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	제14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< 삭제 > 2. · 3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< 삭제 > 4. (현행 제6호와 같음)	제14조(위원회의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 제2호와 같음) 3. ·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제1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.

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⑤ <u>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14조(위원회의 기능 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시민, 소비자단체, 연구·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6조(회의) ① <u>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3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/u></p> <p><삭제></p> <p>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</p> <p>제14조(위원회의 기능 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5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회의) <삭제></p> <p>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